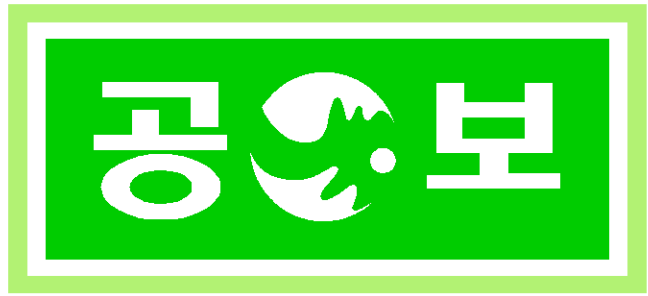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공 람	기 관 의 장

제 1045 호 2017. 1. 5. 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3호[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4호[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고시]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5호[하천 점용·사용 허가기간 연장 고시]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9호[도로명주소 고시] 5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18호[2017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(안)] 7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19호[2017년도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 연서 주민수 공고] 8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20호[2017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] 9

안 내	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계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	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-3호

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·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월 5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
가. 허가연월일 : 2017. 1. 5.
나. 허가번호 : 제2016-14호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불량전주 교체 및 설치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시례동 608-62, 608-6번지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
가. 면 적 : 영구 1.834㎡
나. 기 간 : 2017. 1. 10. ~ 2022. 5. 31.
5. 점용·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장 백익광
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토지구획 정리지구 63B2L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-4호

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·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월 5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원일

가. 허가번호 : 제2016-15호

나. 허가연원일 : 2017. 1. 10.
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단독주택 진입을 위한 진입로 포장
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대안동 1036번지
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

가. 면적 : 영구 64.0㎡, 일시 212.0㎡

나. 기간 : 2017. 1. 10. ~ 2022. 5. 31.

5. 점용·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정복용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길 110, 104동 1806호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2017-5 호

하천 점용·사용 허가기간 연장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·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12월 3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

가. 허가번호 : 제 2017-5 호

나. 허가 연월일 : 2016. 12. 30.
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울산공항 유도표지판 설치를 위한 점용
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신천동 383-3번지 외 2필지
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

가. 면 적 : 164㎡(일시) / 40㎡(영구)

나. 기 간 : 2017. 01. 01. ~ 2017. 1. 10.(일시) / 2017. 01. 01. ~ 2021. 12. 31.(영구)

5. 점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

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(송정동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-9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월 5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제내2길 19(신천동) 외 6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o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7. 1. 5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300-4	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 19(신전동)	2017-01-05	기존 자연마을인 제내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2	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300-16	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 21(신전동)	2017-01-05	기존 자연마을인 제내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3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신하지구 868 5L	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3길 24(산하동)	2017-01-05	화암마을 명칭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	2014-05-07	
4	울산광역시 북구 전곡동 958-3	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159(전곡동)	2017-01-05	관문상으로 가는 길이라 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5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50-3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40(호계동)	2017-01-05	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6	울산광역시 북구 신전지구 198 5L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130(신전동)	2017-01-05	동대산 인근에 위치한 구획단지내 지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1-03-22	
7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1B 14-1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4길 12(진장동)	2017-01-05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 18호

2017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(안)

「주민투표법」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(단위 : 명)

총 인구수	19세 이상 인구수(A)	내국인 (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)	외국인	주민투표 청구주민수 (B=A/20)
195,285	150,131	149,995	229	7,507

- ※ 내 국 인 :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안에
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
(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, 재외국민 거소신고자 제외)
- ※ 외 국 인 :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
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
- ※ 「공직선거법」제18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

2017. 1. 5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19호

2017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수(「공직선거법」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나 음 -

(단위 : 명)

19세 이상 주민총수					연서주민수
계	내국인	주민등록된 재외국민	국내거소신고된 재외국민	외국인	
150,080	149,960	35	27	151	3,752

- ※ 내 국 인 :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
- ※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: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
- ※ 국내거소신고된 재외국민 :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된 19세 이상의 재외국민
- ※ 외 국 인 :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중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
- ※ 연서주민수 :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/40

2017. 1. 5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 20호

2017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

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역선거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7. 1. 5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구청장

(단위 : 명)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	최소 서명인 수	비 고
북 구	150,053	22,508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: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선거구 인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구	농소1동	24,165	1,501	
	농소2동	26,019	1,501	
	농소3동	30,385	1,501	
청	장농동	9,467	1,420	
	효둔동	23,568	1,501	
장	송정동	16,492	1,501	
	양정동	10,065	1,501	
	염포동	9,892	1,484	

○ 구의원

(단위 : 명)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	최소 서명인수	비 고	
구 의 원	기선거구	50,124	10,0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•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	
	동 별	농소1동	24,165		502
		강동동	9,467		502
		송정동	16,492		502
	나선거구	56,404	11,281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•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	동 별	농소2동	26,019		
		농소3동	30,385	304	
	다선거구	43,525	8,70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•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	
	동 별	효문동	23,568		436
		양정동	10,065		436
		염포동	9,892		436

- ※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며,
1.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우리 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)
 2.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「출입국관리법」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산정

※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

1. 구청장 : 청구권자 총수의 15/100이상
2. 구의원 :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